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자산운용지침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포함]

Investment Policy Statement

2021. 2.



한국주택금융공사

목 차

제1장 총 칙

- 제1조 지침의 목적
- 제2조 기금의 개요
- 제3조 일반원칙
- 제4조 정의
- 제5조 자산운용 목적
- 제6조 자산운용 원칙
- 제7조 자산운용체계
- 제8조 주택금융운영위원회
- 제9조 자산운용위원회
- 제10조 리스크관리위원회
- 제11조 성과평가위원회
- 제12조 자산운용 담당조직

제2장 자산운용정책

제1절 자금수지 분석 및 자금배분

- 제13조 운용자금의 분류
- 제14조 자금수지분석
- 제15조 적정유동성규모 산정
- 제16조 만기별 자금배분

제2절 투자정책

- 제17조 목표수익률
- 제18조 허용위험한도
- 제19조 기준수익률
- 제20조 전략적 자산배분
- 제21조 전술적 자산배분
- 제22조 환위험 관리정책

제3절 자산운용기준

- 제23조 투자가능상품
- 제24조 운용상품 선택원칙
- 제25조 상품별 운용한도
- 제26조 내부운용 및 위탁운용 정책
- 제27조 위탁운용기관 선정 및 관리
- 제28조 연기금투자폴
- 제29조 책임투자

제3장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 제30조 위험의 정의
- 제31조 시장위험관리
- 제32조 신용위험관리
- 제33조 유동성위험관리
- 제34조 운영위험관리
- 제35조 자산부채위험관리
- 제36조 위기상황관리
- 제37조 위험관리방법
- 제38조 성과평가 원칙
- 제39조 성과평가 기준

제4장 선관주의 원칙

- 제40조 감사
- 제41조 공시
- 제42조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자산운용지침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포함]

(전부개정 2021.02.23)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63조 및 제79조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을 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개요) 기금 및 계정은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와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금과 계정의 기본재산은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 보증료 등으로 조성되고 보증채무 이행 등 고유 목적달성에 필요한 용도에 지출한 후 잔여 여유자금은 기금확충을 위해 금융자산에 운용되고 있다. 기금 및 계정의 자산운용 규모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일반원칙) ① 이 지침은 기금과 계정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작성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결기구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내용은 1년 단위로 재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 및 공사의 자산운용 내규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산운용 규정 체계는 [별표2]와 같다.

③ 이 지침은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조직과 인력에게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④ 이 지침은 자산운용의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이 되며, 관계법령의 준수여부 및 자산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이란 기금 및 계정의 설립목적에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예치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말한다.
2. "목표수익률"이란 자산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의 목표치(Return Objectives)를 말한다.

3. "허용위험한도"란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감소 등의 불리한 결과에 대한 수용 가능한 정도(Risk Tolerance)를 말한다.
4. "기준수익률"이란 운용자산군을 대표하는 시장수익률로서, 자산배분에 사용된 벤치마크지수의 사후적 실현수익률을 말한다.
5. "전략적 자산배분"이란 자산배분모형을 통해 도출된 자산배분 대안 중 목표 수익률, 허용위험한도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자산군별 최적 배분 비중을 결정하는 것(Strategic Asset Allocation)을 말한다.
6. "허용범위"이란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변동 허용치 한도를 말한다.
7. "전술적 자산배분"이란 시장상황과 운영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자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자산운용 담당자의 재량으로 자산군별 배분비중을 조정해 운용하는 것(Tactical Asset Allocation)을 말한다.
8. "연기금투자폴"이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체계로서 기획재정부가 관리감독하는 위탁운용제도를 말한다.
9. "시간가중수익률"이란 현금의 입출금의 영향을 배제하고 자산의 순자산가치가 반영되는 시가수익률을 말한다.

제5조(자산운용 목적) 자산운용은 고유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금과 계정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재정안정 기반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자산운용 원칙) ① 자산운용은 적정수준의 위험한도 내에서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추구함으로써 기본재산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한다.

② 기금과 계정의 안정성, 유동성 및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기간의 확대 및 투자자산의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도모한다.

제7조(자산운용체계) ① 자산운용체계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며,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두고, 자산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조직을 운영한다.

② 자산운용 의사결정체계도는 [별표3]과 같다.

제8조(주택금융운영위원회) ① 주택금융운영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국가재정법』 제74조의 기금운용심의회에 해당한다.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기금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4. 기타 공사법 및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주택금융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사장,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1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1인씩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④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주택금융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자산운용위원회) ① 『국가재정법』 제76조에 따라 자산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산운용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자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 평가, 위탁운용 정책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 자산운용위원회는 자산운용 담당임원을 포함한 내부위원 3인 및 사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산운용 담당임원으로 한다.

④ 자산운용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자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0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허용위험한도 및 리스크성향의 설정
3. 리스크유형별 한도의 설정

4. 리스크관리규정의 개정

5. 그 밖에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담당임원을 포함한 내부위원 3인 및 이사회에서 선임한 비상임이사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④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성과평가위원회) ① 자산운용 성과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산운용 성과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용기관 성과평가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성과평가위원회는 내부위원 2인 및 자산운용 담당임원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④ 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자금운용 성과평가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자산운용 담당조직) ① 자산운용 업무는 재무회계부에서 담당하며, 자산운용 전략 및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실행, 자금결제 및 사후정산, 결산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② 자산운용의 내부통제를 위해 재무회계부내 조직을 Front(자금운용), Middle(기획 및 모니터링), Back(결제 및 정산) office를 담당하는 팀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③ 리스크관리는 자산운용 담당조직과 독립된 리스크관리부에서 담당하며, 전사적 리스크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리스크 인식 및 측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성과평가는 자산운용 담당조직과 독립된 경영혁신부에서 담당하며,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관련자료의 분석, 성과 보상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⑤ 월간 자금수지분석 및 자산운용계획, 성과평가 및 리스크관리에 관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팀장으로 구성된 자금운용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위원장은 재무회계부장으로 한다.

제2장 자산운용정책

제1절 자금수지 분석 및 자금배분

제13조(운용자금의 분류) ① 운용자금은 보유목적에 따라 유동성 관리를 위한 단기 자금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자금으로 구분한다.

구 분		내 용
단기자금	현금성자금	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금으로, 자금집행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수시입출금식 자금
	유동성자금	운용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금으로,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금
중장기자금		단기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으로, 수익성 제고를 위해 만기 1년 이상으로 투자하는 자금

② 운용자금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은 제외한다.

제14조(자금수지분석) ① 현금흐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금의 유·출입 내역을 분석하고, 자금의 시기와 규모 등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자금은 수입과 지출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수입항목은 출연금, 신용보증료, 구상채권 회수금 및 자금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항목은 대위 변제금, 기금운영비 및 기타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③ 자금수지 항목별로 매월 계획과 실적을 분석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제15조(적정유동성규모 산정) ① 적정유동성규모(유동성버퍼)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Cashflow at Risk 등의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 추정한다.

② 지출의 규모와 시기가 예측가능하거나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항목은 유동성버퍼 추정 시 제외할 수 있다.

③ 현금성자금의 유동성버퍼는 과거 사업비의 일별 지출 평균과 표준편차에 근거하여 99% 목표수준으로 관리기간 3개월 이내의 소요자금에 해당되는 규모로 산정한다.

④ 유동성자금의 유동성버퍼는 과거 순지출의 계획 대비 실적 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근거하여 95% 목표수준으로 관리기간 1년 미만의 소요자금에 해당되는 규모로 산정한다.

⑤ 적정유동성규모 추정의 세부방법(분석항목, 유동성관리 목표기간 및 통제수준 등) 및 추정결과는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명시한다.

제16조(만기별 자금배분) ① 만기별 자금배분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장기운용 대상자금 규모로 산출하여 운용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② 현금성자금은 사업대기성자금 및 유동성버퍼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유동성자금은 월별 순지출 규모 및 유동성버퍼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순수입 예상액 및 만기도래자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배분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중장기자금은 총 운용자금에서 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을 규모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⑤ 만기별 자금배분 금액 및 비중은 연간자금운용계획에 명시한다.

⑥ 사업계획의 변동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자금배분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투자정책

제17조(목표수익률) ① 목표수익률은 주택시장 및 경제상황 등 위험요인 변화에 대비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요구수익률로 설정하며, 요구수익률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대표금융상품의 시황 예측 및 자산배분의 위험 통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단기자산의 목표수익률은 유동성관리 목적임을 감안하여 대표 운용상품인 "MMF 예상수익률"로 설정한다.

③ 중장기자산의 목표수익률은 전체자산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단기자산의 목표수익률과 투자비중을 고려하여 중장기자산이 추구하여야 할 수익률로 설정한다.

④ 2021년 기금 및 계정의 목표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구 분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
기 금	0.70%	1.96%	1.96%
계 정	0.70%	2.20%	2.20%

⑤ 목표수익률과 운용수익률의 차이 및 원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시장환경 및 자금수지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목표수익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허용위험한도) ① 허용위험한도는 자산운용수익률이 정해진 수준을 초과하지 못할 미달위험(Shortfall Risk)을 사용하여 설정하고, 목표수익률과 함께 자산

배분의 제약조건으로 활용한다.

② 기금 및 계정의 단기자산 허용위험한도는 "향후 1년 동안의 Shortfall Risk(원금) $\leq 1\%$ "로 설정한다.

③ 기금의 중장기자산 허용위험한도는 "향후 3년 동안의 Shortfall Risk(원금) $\leq 1\%$ ", "향후 5년 동안의 Shortfall Risk(CPI) $\leq 5\%$ " 및 "향후 1년 동안의 Shortfall Risk(기금배수상승) $\leq 10\%$ "으로 설정한다.

제19조(기준수익률) ① 기준수익률은 명확성, 투자가능성, 측정가능성, 투자방식 및 시장 전망을 반영해야 하며, 운용기간 및 자산군별 기준수익률은 [별표4]와 같다.

② 기준수익률은 자산군별 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되므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 적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제20조(전략적 자산배분) ① 전략적 자산배분은 금융 및 경제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시장분석,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기전망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전략적 자산배분은 3년 이상의 중기 배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투자대상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위험 및 상관관계를 추정하고, 평균-분산 최적화(Mean Variance Optimization) 모형을 통해 다양한 선택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도출한다.

④ 제3항의 방법으로 도출된 복수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자산배분안을 선택한다.

⑤ 전략적 자산배분의 도출과정은 연간자금운용계획에 명시한다.

⑥ 2021년 전략적 자산배분안은 [별표5]로 설정한다.

제21조(전술적 자산배분) 전략적 자산배분에 기초한 각 자산군별 배분비중을 기준으로 일정범위의 변동폭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며, 전술적 자산배분 허용범위는 [별표5]로 설정한다.

제22조(환위험관리 정책) ①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관리 정책은 기금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해외투자에 대한 외환익스포저는 고유사업과의 자연헷지를 위해 헷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헷지비율을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자산운용기준

제23조(투자가능상품) ① 공사법 제58조, 제5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기금의 투자 가능한 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
3. A-등급 이상 금융채·회사채
4. 연기금투자폴 수익증권(채권형, 혼합형 및 MMF형)

② 제1항제4호의 연기금투자폴 혼합형 수익증권에 편입할 수 있는 세부자산은 국내채권형, 국내주식형, 해외채권형, 해외주식형 펀드로 한다.

제24조(운용상품 선택원칙) ① 단기자산은 유동성 확보가 용이한 상품으로 선정하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운용한다.

② 중장기자산은 만기구조, 금융시장 전망 등을 감안하여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운용하며, 전략적 자산배분안 및 허용위험한도 등을 준수한다.

③ 운용상품은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성 제고 및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만기 전에 매도할 수 있다.

④ 만기도래 예정 상품의 재투자 계획은 사전에 수립하여 현금성자금 운용규모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⑤ 운용상품 선택 기준, 만기 전 매도 기준 및 만기도래 자산의 재투자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금운용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25조(상품별 운용한도) ① 금융상품 및 예치기관(발행기관)별로 분산투자하고, 신용등급과 재무구조를 평가하여 투자 및 예치한도를 사전적으로 설정·관리한다.

② 예치대상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연 2회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며, 평가등급별로 예치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한다.

③ 채권의 신용등급은 최근 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채권종류별·발행기관별·신용등급별 매입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한다.

④ 수익증권의 운용한도는 연간 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설정하며, 편입되는 자산의 신용등급, 듀레이션 및 구성비율 등을 제한하여 운용한다.

⑤ 상품별 운용한도 등의 세부기준은 「자금운용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26조(내부운용 및 위탁운용 정책) ① 자산운용은 운용목적, 운용규모, 보유인

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운용과 위탁운용을 병행한다.

② 내부운용은 보증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에 중점을 두면서 수익성을 추구한다.

③ 위탁운용은 외부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력·시스템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다변화를 통한 위험분산 효과 및 수익성 제고를 도모한다.

④ 위탁운용 규모는 총 운용자금의 규모, 내부 자체역량, 비용절감 효과 및 전문성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한다.

제27조(위탁운용기관 선정 및 관리) ① 위탁운용기관은 연기금투자폴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위탁운용기관은 재무구조, 조직 및 인력, 운용성과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운용전략, 위험관리방안, 자문서비스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정량평가는 외부평가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며, 정성평가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위탁운용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③ 위탁운용 시에는 위탁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위험한도, 성과평가 등을 포함하여 위탁운용사가 자의적으로 운용방식을 변경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용기관 선정 시 운용상품에 대한 수익률 보장, 손실보전 이면 계약 등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위탁운용기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운용성과 및 계약준수여부 등을 평가하고 거래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법률위반 등 비정상 운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탁운용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금의 위탁운용기준」에 따른다.

제28조(연기금투자폴) ① 투자폴운영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에 의해 선정되는 연기금투자폴 주간운용사는 제27조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기금투자폴에 대한 자금배분 규모는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익·비용 분석, 위험대비 성과분석, 시장전망에 따른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여 연간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결정한다.

③ 기금운용규모의 증가, 자산군 확대에 따른 전문성 필요 및 기금이 중장기 운용

전략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기금투자플 전담 주간운용사(Outsourced CIO)를 선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9조(책임투자) 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인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기금이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기금 수혜자의 이익향상이라는 목적 하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제3장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제30조(위험의 정의) 위험이란 자산운용 과정에서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 가능성을 말한다.

1. 시장위험(Market Risk) : 이자율, 주가, 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운용상품의 시장가치가 하락되는 위험
2. 신용위험(Credit Risk) :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위험(Default Loss)과 더불어 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손실(Devaluation Loss)위험
3.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 자금부족으로 지출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또는 시장 내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하여 입게 될 손실위험
4.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 부적절한 내부통제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
5. 자산부채위험(ALM Risk) : 중장기적으로 기금 자산을 이용하여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을 부담하지 못해 기금의 목적사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위험

제31조(시장위험관리) ①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성을 활용하여 10영업일의 보유기간 및 99%의 단측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일일 단위로 산출된 Market VaR 값으로 측정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위험 관리대상 자산에 대해 이자율, 주가, 환율 등의 가격변동에 의한 가치하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32조(신용위험관리) ① 신용위험은 부도 시 익스포저(EAD), 예상부도율(PD), 부도시 손실율(LGD) 및 99.9% 신뢰수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Credit VaR 값으로

측정하여 관리한다.

- ② 신용위험 관리대상 자산에 대해 신용등급 변동 및 신용등급별 비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③ 자금운용 시 집중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발행기관)별·신용등급별·상품별 포지션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한다.
- ④ 수익증권은 편입되는 자산의 종목, 신용등급, 만기구조 및 구성비율을 제한함으로써 편입자산의 부실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한다.

제33조(유동성위험관리) ① 유동성위험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에 의해 적정유동성규모(유동성버퍼)를 산정하여 단기자금 규모에 배분하여 관리한다.

- ② 예상 자금수지 분석에 따른 월별 현금과부족 규모, 만기도래 규모 등을 반영하여 자금의 만기구조를 설정하고, 기간별로 분산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4조(운영위험관리) ① 운영위험은 최근 3년간 총이익 평균에 일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위험관리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 ② 자금업무의 직무분리, 내부 자체감사의 수행, 운영리스크 자가진단 등 체계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위험을 관리한다.

제35조(자산부채위험관리) ① 자산부채위험의 크기는 기본재산 대비 신용보증잔액 비율인 운용배수에 의해 측정한다.

- ② 보증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 가계부채증가율, 주택가격상승율 등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며, 부채 듀레이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자산의 만기구조 및 자산배분을 실시하여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제36조(위기상황관리) 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 등 자산운용 시 불리한 상황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기상황 판단지표와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단계별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② 정기적으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의 영향을 점검한다.

제37조(위험관리방법) ① 자금운용에 따른 각종 재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서 설정한 위험한도 범위 내에서 자산을 운용한다.

- ② 위험관리 실무조직은 위험한도 준수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설정된 위험한도를 초과하거나, 위험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험관리 보고 체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위험을 산출하여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시스템의 유효성을 제고한다.
- ④ 위험의 측정방법 및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내용은 「리스크관리규정」, 「리스크관리규정시행세칙」, 「위기상황관리기준」, 「자금업무 운영위험 관리기준」 등을 따른다.

제38조(성과평가 원칙) ①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기준수익률 및 평가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 ② 성과평가는 자산배분정책 및 자산운용의 의사결정주체의 권한을 명확히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보유 포트폴리오로 인한 요인과 외부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한 요인을 고려한다.
- ③ 성과평가는 외부성과평가기관의 성과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산운용과 독립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분기·반기·연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 ④ 성과평가는 단기 및 3년 이상의 중장기평가를 병행하여 자산운용담당자가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관점에서 자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39조(성과평가 기준) ①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로 하며, 단순수익률 외에 위험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을 함께 평가한다.

- ② 성과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한다. 정량평가는 단기 및 3개년 운용수익률, 3개년 위험조정성과, 현금성자금 보유도, 운용상품 집중도 등을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운용체계, 투자정책,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 ③ 실현수익률과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과의 차이에 대해 요인분해를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는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④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의 세부사항은 「자금운용 성과평가기준」에 따른다.

제4장 선관주의 원칙

제40조(감사) ①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재무회계부내 Middle office는 매일 자금 유출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매월 감사실의 입회하에 실물확인감사와

잔액대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실은 자산운용 업무수행 과정의 위법·위규·부정행위에 대해 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내부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는 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한다.

③ 공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기금업무 전반 및 자산운용 관련 사항에 대해 감독기관(국회, 감사원, 금융위원회)의 감사를 수감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외부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수감한다.

제41조(공시) 기금은 자산운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공시하여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1. 자산운용체계, 기금자산운용지침 및 연간자금운용계획
2. 자산운용 현황 및 운용수익률, 기금자산운용평가 결과
3.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의 결산 관련 사항
4. 자산운용위원회 개최결과 등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2조(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① 자산운용담당자는 국민의 재산인 기금 자산의 수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별지]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위준칙 및 자산운용 관련 제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하였을 경우에 손실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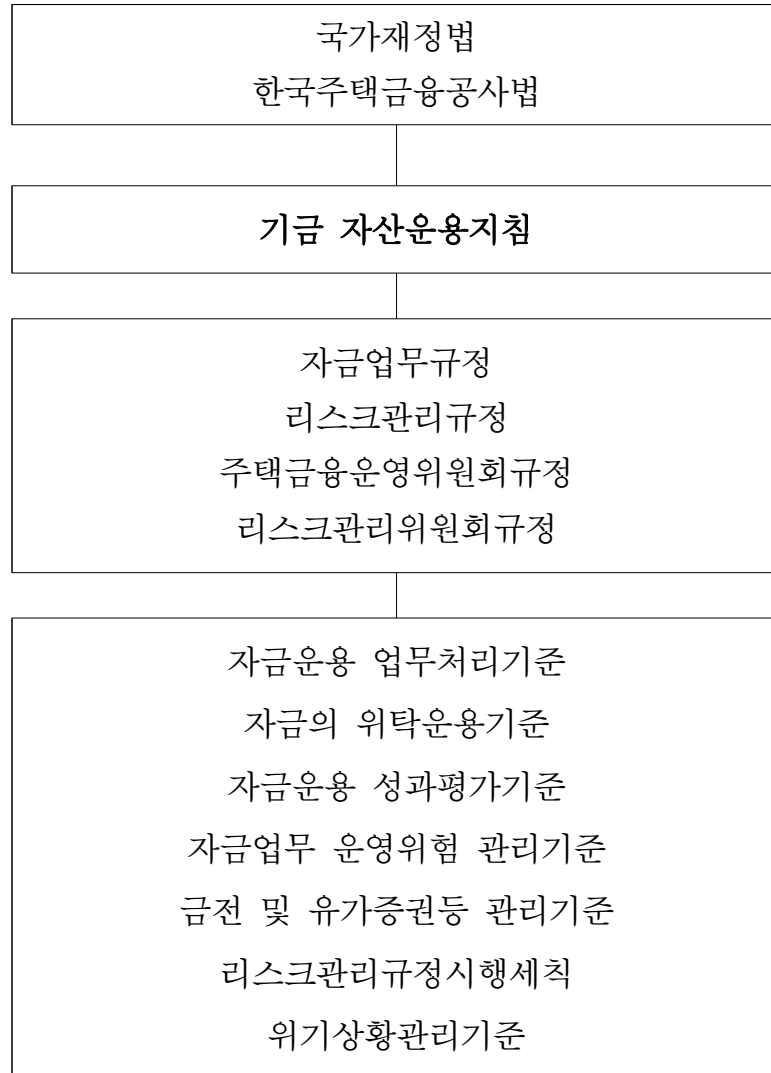
[별표 1] 기금과 계정의 자산운용 규모(제2조 관련)

2020년말 자산운용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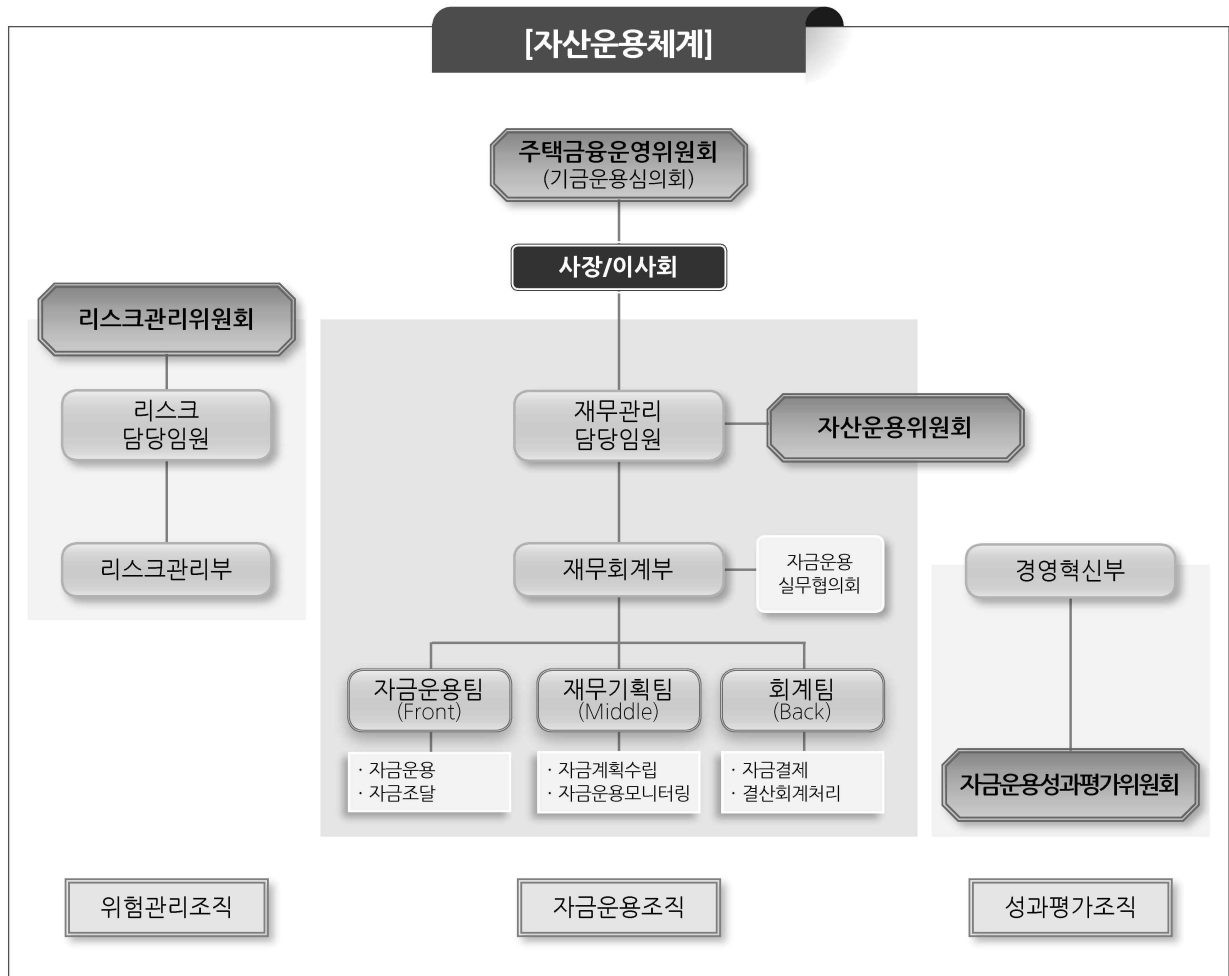
(억원)

구 분	기 금	계 정
예치금	27,152	2,565
유가증권	47,693	2,85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5,300	-
합 계	80,145	5,416

[별표 2] 자산운용 규정체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자산운용 의사결정체계도(제7조제2항 관련)



[별표4] 운용기간 및 자산군별 기준수익률(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기준수익률 산출방법	제공기관
단기 자산	현금성	예치금	MMDA 평균금리	한국은행
		위탁운용	MMF펀드 시장평균 수익률	연기금투자폴
	유동성	예치금	1년 미만 정기예금 수익률 ²⁾	성과평가사
		내부운용 채권	단기 Customized Index ³⁾	KIS채권평가
		위탁운용 채권	자산구성을 감안한 벤치마크지수 ⁴⁾	연기금투자폴
중장기자산		예치금	1년 이상 정기예금 수익률 ²⁾	성과평가사
		내부운용 채권	중장기 Customized Index ³⁾	KIS채권평가
		위탁운용 채권	자산구성을 감안한 벤치마크지수 ⁴⁾	연기금투자폴
		국내주식	KOSPI	한국거래소
		해외채권	Barclays Global Aggregate Index(UH)	연기금투자폴
		해외주식	MSCI All Country World Index(UH)	연기금투자폴
합 계			$\Sigma(\text{운용자산별 기준수익률} \times \text{운용자산별 투자비중}^{5)})$	

주 : 1) 성과평가 기간 중 한국은행 고시금리의 평균금리 적용

2) 각 금융기관이 제시한 금리의 평균을 운용평잔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3) Customized Index : KIS채권평가사에서 제공하는 종합채권지수 중 운용가능한 대표상품들의 시가를 시장비중으로 조합한 값을 적용

4) 통합펀드는 위탁운용사(주간운용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단독펀드는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혼합형 펀드는 세부운용자산의 투자비중으로 가중하여 산출

5) 연간자금계획의 자산배분안 투자비중 적용

[별표 5] 전략적 자산배분안 및 허용범위(제20조제6항 및 제21조 관련)

< 기 금 >

(%)

자산군		SAA ¹⁾ 배분 비중 ('21~'23년)		허용범위 ^{**}
		'21년말		
단기자산	현금성(MMF)	0.2	0.2	±0.2
중장기자산	예금	24.8	19.8	±5.0
	국내채권	64.0	68.0	±4.4
	국내주식*	5.5	3.0	±2.7
	해외채권*	1.0	3.0	±2.9
	해외주식*	4.5	6.0	±2.4
합계		100	100	-

* 연기금투자폴 혼합형으로 운용

** SAA비중에서 연도별로 벗어날 수 있는 변동 허용치 한도

< 계 정 >

(%)

자산군		SAA 배분 비중 ('21~'23년)		허용범위 ^{**}
		'21년말		
단기자산	현금성(MMF)	0.3	0.3	±0.2
중장기자산	예금	22.7	9.7	-3 ~ +13
	국내채권	65.0	73.7	-10 ~ +4.9
	국내주식*	6.0	3.0	±3.0
	해외채권*	1.0	3.6	±3.2
	해외주식*	5.0	9.7	-4.7 ~ +2.6
합계		100	100	-

* 연기금투자폴 혼합형으로 운용

** SAA비중에서 연도별로 벗어날 수 있는 변동 허용치 한도

1) SAA(Strategic Asset Allocation : 전략적 자산배분

[별지]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제42조제1항 관련)

자산운용담당자는 기금 및 계정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기금자산관리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관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음

- (1) 자산운용담당자는 관계 법령, 자금의 운용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자산운용에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의사결정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 (3) 자산운용담당자는 자산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4) 기금자산의 관리자로서 안정성, 공공성, 수익성이 최대화되도록 윤리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한다.
- (5)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물질적·금전적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 (6) 자신의 이익과 기금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기금의 이익을 우선한다.
- (7) 자산운용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는 기금의 자산운용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 (8) 자산운용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 (9)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기금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10) 사회통념 및 사회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자산운용을 지양한다.
- (11) 부당하게 위탁운용기관의 자산운용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12) 실적배당형상품의 금리약정, 손실보전 이면계약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한다.
- (13) 금리입찰, 수수료 덤핑 등 과도한 경쟁유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4)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개인적 이해관계나 특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위 의사결정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는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자를 해당 의사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